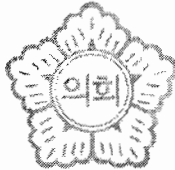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28회 임시회(2019. 3.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23
----------	-------

2019. 3. 6.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권영숙 의원 외 5인
- 나. 제 안 일 : 2019. 2. 25.
- 다. 회 부 일 : 2019. 2. 2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이해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대상(안 제1조~제3조)
- 나. 의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라. 운영 및 장소제공 등(안 제6조)
- 마. 수수료증 수여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19. 2. 27.~2019. 3. 4.) :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제정안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구의회가 매년 시행해 오던 의회체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의의회 체험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안된 것임.

1)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 “청소년 의회체험”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체험 활동의 대상을 지정함.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등 포함할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에 필요한 시설 사용과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청소년 의회체험 대상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2) 검토의견은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청소년 정의는 청소년기본법¹⁾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중등·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해석상 논란을 피하고 실질적 체험 대상을 고려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²⁾에 따라 학교의 범위를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광의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정의는 기존에 해왔던 '모의의회'만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의회 체험 활동에 있어서 참여자에게 다과와 방문 기념품,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의회체험 활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기록물로서는 2003년에 '제7회 어린이 모의의회'를 계획한 문서를 확인하였으며, 그 이전 자료는 확인 할 수 없었음. 확인한 기록물을 근거로 의회 체험 활동인 '모의의회'의 연혁을 추론해보면 199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5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1) 최근 5년간 청소년 모의의회 추진실적

연도	추진기간	참여학교	참여인원	비 고
2018	10월	신석초	30명	1회
2017	7월	상지초, 염리초	60명	2회
2016	4월	관내 중학생	250명	진로박람회
2015	6월	서교초, 소의초, 상지초	83명	3회
2014	10월	서울여중, 중동초, 신석초	95명	3회

의회사무국의 의회 체험활동인 '모의의회'는 최초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의장방침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의 지속적 유지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제정안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17. 9. 21.
2	중 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16. 11. 23.
3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 12. 31.
4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8. 4. 5.
5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18. 3. 29.
6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11. 9
7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6. 9. 28.
8	경기도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	'16. 7. 19.
9	시흥시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16. 12. 30.
10	화성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	'17. 11. 21.
11	강원도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18. 11. 9.
12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19. 2. 7.
13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 조례	'15. 8. 12.
14	충남	충청남도의회 학생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	'18. 10. 30.
15	음성군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18. 11. 5.
16	서산시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17. 7. 14.
17	전남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18. 4. 26.
18	완도군	완도군의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의회체험 활동 지원 조례	'17. 8. 14.

[관 계 법 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